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임용기준 강화〉

■ 나경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097호)

2026.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개 요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 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주요내용	3
2. 검토의견	6

I. 개 요

1.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나경원의원 등 22인
2. 발의연월일 : 2025. 12. 10.
3. 회부연월일 : 2025. 12. 1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질서의 유지를 위한 국가안보 분야로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분야에는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음.

이를 바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칙」과 「선거관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 규칙」 등에서 임용권자가 외국인을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채용하거나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는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체제의 핵심인 선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하는 의무를 수행하고 있어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에 관련되므로 외국인을 그 소속 공무원으로 채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그 임용 형식을 불문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복수국적자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임용 시 및 임용 후에 신원조사를 받도록 하여 국가안보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 전보 또는 업무분장의 조정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4 및 제15조의5 신설).

II.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외국인(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의 임용 또는 임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중에는 그 임용이 곤란하거나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한 위험성이 없는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안 제15조의4 신설),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 시 그리고 4년 이하의 범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신원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한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분장 조정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5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5조의4(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국적)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제26조의5 등에 따른 임용 형식을 불문한다. 이하 같다)으로 임용 또는 임명될 수 없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신 설>

가진 자 중에는 그 임용이 곤란하거나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한 위험성이 없는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제1항 단서의 경우는 제외한다)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5조의5(복수국적자에 대한 신원조사)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사무총장은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또는 임명하는 경우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4항의 위임에 따른 보안 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한 신원조사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정보원장은 예정된 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한 위험성에 대한 의견을 신원조사 회신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복수국적자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임용

또는 임명 이후에도 4년 이하의 범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1항에 따른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른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한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복수국적자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업무분장 조정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3급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례) 이 법 시행 당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이 법 시행 이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퇴직한다.

2. 검토의견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은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¹⁾의 공무원 임용과 관련하여,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제한적 허용),

복수국적자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질서의 유지를 위한 국가안보 분야,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하게 되는 보안·기밀 분야, 외교나 국가 간 이해관계와 관련된 정책의 결정 및 집행 등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부적합한 분야로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분야에는 공무원 임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원칙적 허용).²⁾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서는 외국인을 전문경력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복수국적자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업무 중 보안 시설 출입,

1) 「국적법」

제3조(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이하 “외국인”이라 한다)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認知)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제11조의2(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① 출생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라 한다]은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

2) 「국가공무원법」

제3조(적용 범위) ③ 제26조의2와 제26조의3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

제26조의3(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①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로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분야에는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질서의 유지를 위한 국가안보 분야
2.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하게 되는 보안·기밀 분야
3. 외교, 국가 간 이해관계와 관련된 정책결정 및 집행 등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부적합한 분야

비밀문서·자재 취급 등 복수국적자가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사무총장이 정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임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³⁾

개정안은 외국인의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임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중에는 그 임용이 곤란하거나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한 위험성이 없는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허용하도록 하고, 복수국적자에 대해서는 임명할 때와 임명 이후에도 4년 이하의 범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신원조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공무 수행에 있어 국익 강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외국인의 공무담임권에 관한 기준 설정은 입법자의 재량사항이라 할 수 있으나⁴⁾ 현행법에서 이미 개정안의 취지대로 국가안보, 보안·기밀 등의 분야에 외국인의 임용을 제한하고 있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이 없다는 점을 심사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3)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의4(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① 임용권자는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외국인을 전문경력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업무 중 보안 시설 출입, 비밀문서·자재 취급 등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사무총장이 정하는 분야에는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별정직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는 법 제26조의3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4) 「대한민국 헌법」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또한, 개정안의 복수국적자에 대한 신원조사와 관련하여,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처우하도록 되어 있는바⁵⁾ 공무원 임용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의 신원조사⁶⁾를 별도로 거치도록 하는 등 내국인과 다른 기준을 적용할 경우 차별적 소지가 없는지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며,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한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분장 조정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험성’은 그 의미가 불명확하여 객관적 판단이 이루어지기 어려워 보이므로,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점들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한편, 헌법기관별 외국인등의 임용과 관련하여 유사한 취지로 나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2215090, 2025-12-10), 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법률안(2215097, 2025-12-1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2215089, 2025-12-10)이 함께 발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개정될 경우 법률 간 정합성 확보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5) 「국적법」

제11조의2(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① 출생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라 한다]은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

6) 「보안업무규정」 제36조(신원조사) ① 국가정보원장은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충성심·신뢰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한다.

② 삭제

③ 관계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1. 공무원 임용 예정자(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인 사람으로 한정한다)

2.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

3. 삭제

4. 국가보안시설·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해당 국가보안시설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5. 삭제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이나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외국인등 공무원 임용 관련 법률안 주요내용(나경원의원 대표발의)》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104)	[외국인·복수국적자(공통)] ◦ 임용 요건 강화 - 대한민국 국민(복수국적자 제외)을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함 -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전문 분야에 대해서만 외국인등의 공무원 임용을 허용 ◦ 임용 시 국가정보원 신원조회 의무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090)	[외국인] ◦ 임용 요건 강화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중에는 그 임용이 곤란하거나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한 위험성이 없는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로서 규칙(대법원, 중앙선거위, 헌재)으로 정하는 경우 [복수국적자] ◦ 임용 시 및 정기적(4년 이내) 신원조사 의무화 ◦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한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분장 조정 등 조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09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089)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의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임용을 제한할지 여부는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의 성격·특수성과 다른 국가기관과의 형평성,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공무담임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회가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는 입장인데, 개정안 제15조의5제3항에서의 ‘위험성’은 그 의미가 불명확하여 이를 판별할 객관적 기준 마련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의견을 함께 제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42